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0. . . (제 회)	

우 주 정 보 업 무 규 정 제 정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진영 (국가정보원 소관)
제출 연월일	2020.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우주 정보 업무규정 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정이유

우주에서 수집된 안보관련 정보와, 위성과 같은 우주자산의 보호 등 국가안보에 영향을 끼치는 우주 관련 정보에 대한 수집·작성·배포 업무를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에 신설한 「국가정보원법」이 개정(법률 제 0000호, 2021.1.1 공포)됨에 따라 직무 수행을 위하여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국가정보원이 위성자산 등을 활용하여 우주 정보를 수집·작성함을 규정함(안 제3조).
- 나. 국가정보원이 수집·작성한 정보를 관계 기관에 배포·공유하고, 이를 위한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조).
- 다. 국가정보원은 안보 관련 우주 정보의 수집 및 활용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(안 제5조).
- 라. 국가정보원은 직무수행을 위한 연구·개발 활동을 독자 또는 관계 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조).
- 마. 국가정보원이 우주 정보 및 위성자산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관련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(안 제8조)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

라. 기 타 : 입법예고(2020. 12. 16. ~ 12. 18.)

우주 정보 업무규정 제정안

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국가정보원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제1항 제1호마목에 따른 “위성자산 등 안보 관련 우주 정보” 업무에 대한 세부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위성자산 등”이란 우주 공간에 관한 정보의 수집·작성·배포를 위해 설계·제작된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우주물체 및 이와 관련된 시설·시스템 등을 말한다.
2. “안보 관련 우주 정보”(이하 “우주 정보”라 한다)란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정보 중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.

가. 위성자산 등에 관한 정보

나. 위성자산 등을 활용하여 우주공간에서 수집한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 제3호부터 제6호에 따른 정보

3. “관계기관”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기관 및 단체 중 우주 정보의 수집·작성·배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.

가.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조 제1호에서 정한 공공기관

나. 위성자산 등을 개발·제작·보유·이용하는 기관 및 단체

제3조(정보의 수집·작성) ① 국가정보원장(이하 “국정원장”이라 한다)은 위성자산 및 인적·물적 자산을 활용하여 우주 정보를 수집·작성한다.

② 국정원장은 제1항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해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·유지할 수 있다.

제4조(정보의 배포·공유) ① 국정원장은 수집·작성한 우주 정보를 관계기관에 배포·공유할 수 있다.

② 국정원장은 제1항에 따른 우주 정보를 원활히 배포·공유하기 위하여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국정원장이 정한다.

제5조(안보 관련 우주 정보 계획 수립) 국정원장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안보 관련 국가 중장기 우주 정보 수집 및 활용계획을 수립한다.

제6조(관계기관 협조 요청) 국정원장은 우주 정보의 효율적 관리·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을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할 수 있다.

1. 우주 정보 및 관련 자료의 제공
2. 위성자산 등의 확보 및 활용
3. 그 밖에 우주 정보와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

제7조(연구·개발) 국정원장은 위성자산 등의 확보 및 활용에 필요한 기술을 단독 또는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연구·개발할 수 있다.

제8조(보안조치) ① 국정원장은 우주 정보 및 위성자산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보안조치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국정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국가정보원	
연 락 처	(02) 572 - 3616